

광역단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연구

2008

연구위원 : 송혜림 교수

라휘문 교수

감수 : 금창호 박사

광역단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연구

송혜림
라휘문

2008

광역단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 송혜림교수(울산대학교)

공동연구자 : 라휘문교수(성결대학교)

감 수 : 금창호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기간 : 2009. 8. ~ 2009. 11.

2008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사업의 기대효과	7
제3절 사업의 내용과 방법	9
1. 사업의 내용	9
2. 사업의 방법	10
제2장 관련 연구 고찰	11
제1절 가족정책 전달체계	13
1. 중앙부처	13
2. 광역자치단체	14
3. 기초자치단체	15
제2절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선행연구	16
1.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선행연구	16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립 관련 연구	19
제3절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법적 근거	25
1. 건강가정기본법	25
2.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2007)	26

제3장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 정립을 위한 이론적 접근	29
제1절 기능의 개요	31
1. 개념	31
2. 기능의 분류	31
제2절 다계층 조직의 계층별 기능배분의 일반원칙과 기준	32
1. 기능배분의 일반원칙	32
2. 기능배분의 일반기준	34
제3절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설정	36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	37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계층구조	37
3.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	38
제4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분석	43
제1절 분석결과	45
1. 가족정책 전달체계	46
2. 계층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수적인 기능	48
3.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 역할	55
4. 평가의 기능	57
제2절 분석과 논의	63
1. 논의점	63
2. 중앙/광역/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유사기능과 차이기능 분석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역할과 기능 분담	68

제5장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71
제1절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	73
1. 이론적 논의결과	73
2. 전문가 및 실무자/관련자 심층면접결과	74
3. 연계의 역할강조에 의한 분석결과	74
제2절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한 특수성	75
1. 시기적 특성	75
2. 기관의 특성	76
3. 규모의 특성	77
제3절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77
1. 핵심기능	78
2. 기타 기능	80
3. 종합	81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건의	83
제1절 연구의 요약	85
제2절 정책적 제안	89
참고문헌	97
부 록	101
부록 1. 건강가정기본법	103
부록 2.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115
부록 3. 서울시·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127

표 목 차

<표 3-1> 계층간 기능배분기준	36
<표 3-2>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	40
<표 4-1> 계층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수적인 기능 요약	55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접근방법	10
<그림 2-1> 서울특별시 가족정책 전달체계	14
<그림 3-1> 건강가정사업의 영역과 목적	37
<그림 3-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계층구조	38
<그림 3-3>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관장기능 판단모형	39
<그림 4-1>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역할	57
<그림 4-2> 상향식 평가모형	62
<그림 4-3> 하향식 평가모형	62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립을 위하여 수행된 본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광역 단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확한 역할 도출

- 통합적 가족정책의 출발을 상징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에는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의 대표적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 이 근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함.
 - 즉,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의 목표는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단위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이 명시적으로 도출될 필요가 있음.
 - 법에 명시된 중앙,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별로 차별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임.
 - 현재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건강가정지원

센터를 포함하여 총 83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2008년 10월 현재).

-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명실공히 광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는 2007년도 설치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유일하다고 하겠음.
 - 관련되는 선행 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하면, 광역 자치단체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와 교류를 중심 역할로, 특히 기초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이 명시적인 광역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설치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적실한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도출해 냄으로써, 광역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함.

2. 효과적인 건강가정 전달체계 연계시스템 구축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 전달체계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런데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속도에 비해 광역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속도가 매우 지체되고 있어, 중앙-시·도-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및 연계와 소통의 체계가 취약해 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건강가정 전달체계 전체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함.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편적이고도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을 개발하며, 해마다 공통필수사업을

정하여 전국의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공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재 80개 이상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조력을 하기에는 이미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숫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하겠음.

- 따라서 광역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활성화되어 중앙-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매개하고 연계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의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현재 20개 이상의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연계하는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임.
- 이와 같이 본 연구사업을 통해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확한 역할을 도출해 냄으로써, 중앙-시·도-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계되는 전체 건강가정 전달체계의 효과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3.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모델 제시 및 향후 전국적인 설치·운영의 활성화 계기 마련

- 광역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달체계로는 처음 설치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성공적인 운영방향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전국에 설치될 광역 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시기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음.
-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치 근거 및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에 따라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임.
- 이에 따라 광역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도 예상되는 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장 먼저 설치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향후 다른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의 모델을 제시해야 할 선도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임.
-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광역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될 것을 예측할 때,

명실공히 광역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출발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타 센터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송혜림 외, 2008).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확한 역할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역할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 또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명확한 역할을 바탕으로 위상을 견고히 정립함에 따라, 향후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현재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당한 정도 설치되어 있으나, 광역 단위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속도는 상대적으로 지체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다분히 선행사례, 즉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미약하다는 환경적 요인에도 기인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광역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모델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다른 지역 광역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행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역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4.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23개소의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다양한 환경과 특성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역할이 매우 부각된다고 할 것임.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우선적인 업무는 해당 지역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조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가족정책을 실행하는 주요 거점으로, 대표적인 전달체계로 자리매김되도록 하는 것임.
 - 본 연구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조력하는 업무를 파악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주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많은 수의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구심점 역할 정립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임.
- 상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이미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가 타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에서 가족정책 추진의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광역 단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가족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업을 통하여 광역 단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는 핵심적 역할, 즉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가시화하고자 함.

제2절 사업의 기대효과

- 본 연구사업을 통해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여 제시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1.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 정립

- 본 연구사업을 통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차별되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을 보다 견고히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사업에서 제시하는 역할과 기능에 토대하여 향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서울특별시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전달체계로서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2.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

-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겠음.
 - 본 연구사업을 통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울시민들에게 1차적인 가족행복의 도우미, 친밀한 공동체 공간, 가족친화문화조성의 거점, 생활에 밀착한 기관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은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 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서울특별시의 가족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건강가정 전달체계의 효과적인 모형 정립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와 조정이 원활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중앙-시·도-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전체 건강가정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의 모형을 정립하고, 각 전달체계 간 연계와 소통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족정책 추진의 체계를 확고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제3절 사업의 내용과 방법

- 광역 단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이를 진행시키기 위해 적용된 방법은 아래와 같음.

1. 사업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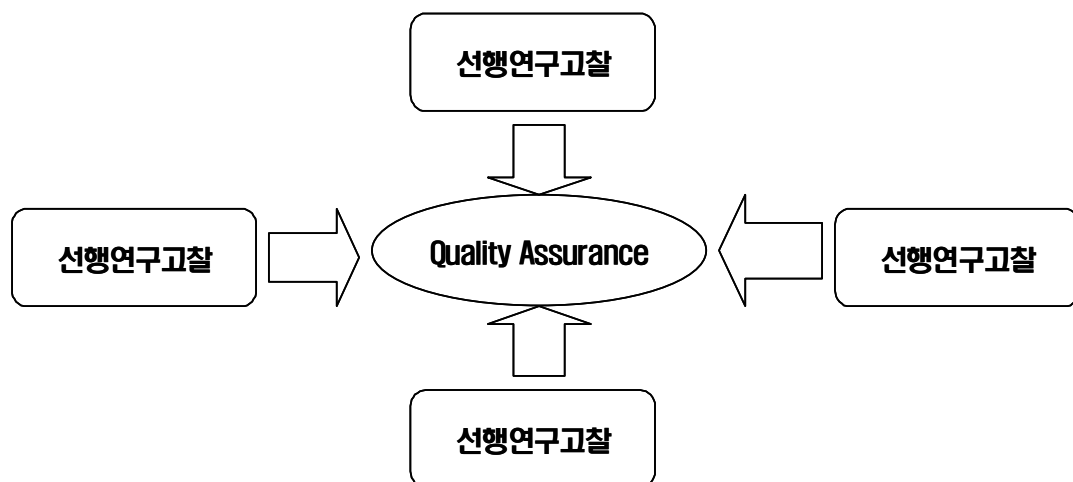
- 관련 선행연구 및 조사결과 파악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하고 조사한 선행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심층면접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
- 건강가정기본법,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대한 분석
 -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 서울특별시 조례 등의 관련 내용을 분석함.
-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 수집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 등을 선정하여,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고유 역할과 기능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의 내용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의 내용
- 결과 분석 및 종합
- 이상과 같은 자료를 종합, 정리한 후, 이 자료에 토대해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여 제시하고자 함.

2. 사업의 방법

- 선행연구 고찰
-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 심층면접
 - 면접대상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1인) +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과 실무자(4인) + 외부전문가(여성/가족 관련 연구기관, 행정 관련 연구기관, 보육 관련 전달체계 시설장 5인) : 총 10인
 - 면접기간 : 2008년 8월-10월
- 연구세미나

<그림 1-1>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접근방법



제2장 관련 연구 고찰

제2장 관련 연구 고찰

제1절 가족정책 전달체계

1. 중앙부처

- 본 사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정책 추진의 대표적인 공적 전달체계 임.
 -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상에는 가족정책 추진의 공적 전달체계가 두 가지 형태로 제시되는데, 그 중 하나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이며, 또 하나는 전담조직, 즉 행정 차원에서의 부처와 부서를 의미함.
 - 우리나라 가족정책 추진의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함.

-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의 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라는 행정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달되어 왔음.
 - 동시에 여성가족부의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가족관련 민간단체 및 여성단체 등이 지원하고 있음 (김경신 외, 2007).
 - 이 시점까지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이며, 여성가족부내 가족정책국(가족정책팀, 가족지원팀, 가족문화팀)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

-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현재 가족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내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속

해 있는 가족정책관이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로 구성되어 가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광역자치단체

-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가족정책 추진 사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저출산대책담당관에서 가족정책팀을 두고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08 12. 현재).

<그림 2-1> 서울특별시 가족정책 전달체계



- 이 중 가족정책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음.
 -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지원
 - 아이돌보미사업
 - 모부자복지시설 운영총괄
 - 미혼양육모시설 운영지원
 - 가족심포지엄 업무
 - 모부자,미혼양육모시설 기능보강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리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사업

3. 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남.
 - 예컨대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는 주민생활지원국의 가정복지과에서 가족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국의 가족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4. 기타

- 한편, 이러한 행정 전담조직 외에 우리나라 가족정책 추진의 대표적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8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8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35개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센터이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센터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은 위탁과 직영으로 구분되며 대다수는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고 직영은 13개소임.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탁의 형태임.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2009년 부터는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의 경우, 총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5개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9년부터는 서울시 자치구 센터를 국비지원센터와 동일하게 시비를 지원할 예정임.

제2절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선행연구

1.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선행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견해를 종합하기 전, 먼저 보편적으로 본 연구사업에서 주목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연구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함.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년) 및 시행(2005) 초기의 연구들은, 아직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초기 시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편적인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단위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 정립의 필요성, 조직체계 구성 및 운영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송혜림·장진경(2004)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방안’ 관련 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핵심적 거점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제시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리방안의 필요성,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와 모형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함.
 - 중앙, 시도 및 시군구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업무분담, 상호연계체계,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협력체계 등의 필요성을 제시함.
 -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앙과 시·도 그리고 시·군·구 등 3개 단위로 설치되는 맥락에서 단위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계와 연계를 고려한 업무분담과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업무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하며 동일한 명칭의 업무라도 그 업무를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할 때와 시·도/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할 때 세부적인 업무내용, 목표, 운영방안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음.
- 김양희 외(2005)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이론 등을 통대로 건강가정사업을 명료화하고, 외국의 사례 및 관련기관들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모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있음.
- 정재훈 외(2005)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실태를 분석하고, 가족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둘러싼 쟁점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승미 외(2005)는 ‘중앙, 시·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및 체계구축’ 연구를 통해, 3개 단위로 구분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상호연계방안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음

- 나아가 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단계별 조직, 사업, 예산규모 확충의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장진경 외(2006a)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와 조직’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기본법의 업무와 사업을 현장에 실천하기 위한 지도기관으로써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건강가정사업과 업무를 총괄기획하면서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 사업과 관련한 사업체 기관 등에 건강가정사를 파견하는 일을 주된 역할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후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대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 등, 그 주제와 내용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 사례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의 가능성(송혜림 외, 2006), 건강가정지원센터 홍보 및 시설에 관한 연구(장진경 외, 200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송혜림 외, 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정지영 외, 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송혜림 외, 2008) 등이 있음.
- 한편, 라휘문 외(2007)의 ‘건강가정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중요사업의 성과분석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와 관련하여 기관평가의 방향과 사업평가의 방향을 동시에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음.
- 또 다른 사례로서, 송혜림 외(2008)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

센터가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및 실무자 대상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여, 가족서비스의 방향을 도출해 내고 있음.

- 이와 같이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주제를 설정하여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립 관련 연구

- 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경향을 제시하였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립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자 함.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2005년도를 기점으로, 단위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초기 시점 이승미 외(2005)는 ‘중앙, 시·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및 체계구축’ 연구를 통해 각 단위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상위 기관으로서 건강가정사업 및 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과 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건강가정문화 조성 및 확산, 건강가정관련 정책 및 사업 제안 등을 주요역할로 규정하였음.
 -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연계하고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평가, 시·도 단위의 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으로 교육, 상담, 문화사업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김양희 외(2005)의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모형 개발’에서는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역할과 기능을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중앙차원에서 가정업무의 통합성을 실현할 수 있는 틀을 개발, 제공하고 이를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함으로써 전국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가정정책이 추진 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함.
 -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건강가정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관련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정부 및 관련 부처의 효율적인 정책 편성 및 운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함.
 - 전국의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정보와 자원의 교환과 지원, 교육, 종사자 상담 등의 기회를 마련함.
 - 건강가정과 관련된 총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향후 건강가정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함.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교육, 재교육을 통해 인적자원개발과 향상의 조건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종사자 수급관리역할을 통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건강가정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앙에서 담당하여 효과성을 창출하도록 구조화하여야 함.
 - 기존프로그램을 영역별로 수집하여 DB화하고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보급함.
 -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목표달성, 효과적인 사업수행,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실현,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평가

- 와 감독이 필요한데, 이 역할은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여야 함.
-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정착, 확산하기 위해서 건강가정문화운동이 중요하며 문화사업의 기획과 공동수행의 역할을 통해 전국적인 건강가정문화운동을 펼쳐가는 중심지의 역할을 해야 함.
 - 또한 이 연구에서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해당 시·도 내에 소재하는 시·군·구 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만,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 경우는 그 역할을 대행하며, 시·도내 건강가정정책연구와 건강가정관련 종사자 교육,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협의체의 구심점역할을 하며, 중앙센터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함.
- 정재훈 외(2005)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단위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과 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음.
-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 연구개발, 인력 교육관리, 전문인력 양성,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평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운동 및 홍보, 관련부처 및 하위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 대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 중앙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시·도 단위 건강가정사업 및 정책 연구개발, 시·군·구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지원, 시·도/시·군·구 공무원 교육, 홍보, 대외협력, 광역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홍보, 시·도 내 대외협력 및 네트워크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상담, 교육, 문화,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수행.
- 장진경 외(2006a)의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모형개발연구’에서는,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중앙-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결 터미널로서의 역할 그리고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중시하면서, 앞으로 각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을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에 걸쳐 확산될 것이므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성을 고려한 시·군·구 센터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야 함을 강조함.
-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전체적인 틀을 잡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시·도 센터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정책 수립, 지원체제 구축 등 간접적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시·군·구 센터는 최일선에서 대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역할 구분을 하고 있음.
- 이 중에서 특히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건강가정 관련 시·도 정책연구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및 관련 공무원 교육
 - 시·도 내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협의체 지원
 - 시·도 건강가정 유관기관의 네트워킹
- 장진경 외(2006b)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자의 역할 인식 조사연구’에서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총괄기획, 조정, 지원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건강가정사업의 총괄과 기획, 연구·정책개발, 지역센터와의 연계, 공적·민간 전달체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통합적 가정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적인 역할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이 연구에서,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중 시·도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 지원과 ‘홍보사업’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돕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다 원활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홍보를 지원해야 할 역할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 라휘문 외(2007)의 ‘건강가정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연구’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기능을 분담할 필요성을 강조함.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정책의 업무를 지원 및 대행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조장자의 역할과 평가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동시에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또한 직접적인 사업을 집행하기보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대안을 마련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강조함.
 -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행정계층을 중심으로 볼 때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송혜림 외(2008)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13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대략적으로 질문하여 실무자들의 견해를 수렴한 바 있음.
 -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들 간의 연계 및 구심점 역할
 - ‘자치구→서울시→중앙’으로의 체계 정립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연합의 대단위/대규모 건강가정지원센터 홍보 및 연합(대규모) 프로그램 실시
 - 실무자 보수교육

- 중앙정부(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특별시 간 가족정책의 틀과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매개 역할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견을 통합·조율하여 상위기관이나 서울시에 전달
 - 서울특별시 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요구하는 광역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은 ‘지원’의 역할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광역 단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그 위탁기관의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광역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화를 인정하면서도 격차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이상과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 및 제언점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은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평가로 회귀됨.
 - 이 중에서 지원의 역할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한 정보의 수집과 자료 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력 수급 지원, 근무자 교육 및 재교육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전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건강가정사업과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이라고 하겠음.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이라는 점임.

- 건강가정사업은 가족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위한 문화활동, 정보제공, 가족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연계와 네트워킹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될 것인데,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가족서비스를 일선에서 제공하는 친밀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된다고 하겠음.
- 이렇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반면,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상대적으로 보다 추상적이고도 개념적인 차원에서 규정되는 경향을 보임.
-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연계하는 것이며, 동시에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부각되고 있음.
 - 여기에서 중앙-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와 매개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또한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역할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근무자 교육, 정보제공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임.

제3절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법적 근거

1.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법 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조항에 보면,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

- 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음.
- 이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와 역할을 유추할 수 있음. 즉 가정문제 예방, 가정문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문화운동,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이라고 하겠음.
 -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는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조직이라 함은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이며, 업무는 역할과 기능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조직에 대한 내용은 곧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음.
 -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제 13조).
 - 이러한 조항은 매우 추상적인 기준으로서, 이 내용만으로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추론하기는 힘들다고 하겠음.
 - 그러나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에 관해서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에 필요한 팀을 둔다(제 14조)고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업무와의 연계를 내포하고 있음.
 - 즉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은 상담, 교육, 문화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하겠음.
- 이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 상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히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각각의 차별적인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2007)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 14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제3장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제 11조 설치 및 기능에 따르면,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교육·가정문제상담 및 가족생활문화운동 전개
 -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지원·평가 및 가정관련 정보 제공
 -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이 조례에 따르면,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문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광역 단위 요구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사업 평가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겠음.
-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사업의 수행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 위 조례에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중 하나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문화운동의 전개라고 규정한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임.
- 그 외의 역할과 기능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이라는 포괄적 맥락에서 필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적절한 역할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제3장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정립을 위한
이론적 접근**

제3장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 정립을 위한 이론적 접근

제1절 기능의 개요

1. 개념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일반적으로 기능은 특정조직에 부여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의 총체적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련의 동질적 또는 유사한 사무의 집합단위를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러한 기능은 조직의 기구편제와 인력수요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 기능의 성격에 따른 분류결과가 기구편제로 나타나고, 기능의 양적 규모가 인력수요의 결정요인이 됨

2. 기능의 분류

- 특정조직이 관장하는 기능은 대상과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음(금창호 외, 2008: 302)
 - 대상 기준 : 특정조직이 관장하는 대상의 종류별로 기능을 구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사례로 들면, 복지기능, 경제기능, 환경기능, 도시기능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 성격 기준 : 특정조직이 조직환경에 대응하여 유지 및 발전하기 위한 일련의 기능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계획기능, 유지기능 및 사업기능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 따라서 특정조직이 조직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능설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이 적절하게 검토되어야 함
 - 하나는 총량적인 측면에서 조직발전에 필요한 기능들이 망라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조직환경의 양태에 따라 각 시점별로 관장기능의 비중도가 적절하게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임

제2절 다계층 조직의 계층별 기능배분의 일반원칙과 기준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등 계층별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이러한 계층별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을 도출하여야, 본 사업에서 주목하는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음

1. 기능배분의 일반원칙

- 동일 또는 유사한 미션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 다계층의 구조로 편제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층간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중첩현상에 따른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층간 기능배분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김영수, 1995; 김병국: 2003)

- 보충성의 원칙
 - 다계층의 계층간 기능배분의 우선적 원칙은 최하위 계층단위 우선이라는 보충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이는 다계층에서 상위계층이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최하위 계층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을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최하위 계층에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최하위계층을 기준으로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계층은 최하위계층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임

○ 책임명확화의 원칙

- 특정한 하나의 기능은 다계층의 어느 한 계층에 전속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특정의 기능이 특정의 계층에 배분되면 완결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권을 부여하여야 함
- 이러한 원칙은 한 종류의 기능을 한 계층에만 부여하여 각 계층별 전문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관할중복에서 초래되는 이중감독, 이중규제, 이중처리 등의 폐해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낭비와 대립을 줄이기 위하여 기능을 가능한 명확하게 구분해서 배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확보하는 것임

○ 능률과 경제성의 원칙

- 특정의 기능을 배분하는 경우에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 관리상의 능률성 제고, 서비스 향상 등 편익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층에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임
- 다시 말하면, 특정의 기능처리에 필요한 능력 및 규모와 수요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계층단위에 기능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것임
- 특히,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처럼 특정기능의 비용과 편익을 포함할 수 있는 계층단위에 해당기능을 배분함으로써 외부경제 혹은 외부불경제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는 기능배분이 도모되어야 함

○ 수요적합성의 원칙

- 특정의 계층단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역할에 대응한 공급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능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임
- 특히, 수요자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요구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

성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별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수요 적합성이 구비 되도록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2. 기능배분의 일반기준

○ 일반적인 판단기준

- 다계층 특히, 중앙, 광역 및 기초로 연계되는 3개 계층을 상정할 경우 기능배분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김재훈, 1994; 김병국, 2003)
- 기능의 영향범위를 기능배분의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함
 - 기능수행에 따른 영향력이 전국적인가 또는 지역적인가 하는 점이 계층간 기능배분의 일차적 판단기준이 됨
 - 구체적으로는 종합적 계획의 조정, 전국적인 통일성, 고도의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되는 기능은 중앙계층에 배분하고, 여타의 기능은 차하위 각 계층별로 배분하는 것임
 - 여기에서 전국적 통일성은 기능수행의 파급효과가 전국적이거나, 전국적 단위로 통일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거나, 전국적 규모의 수급조절이 필요한 것을 망라하는 것임
- 기능수행의 용이성을 기능배분의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이는 특정기능의 처리주체가 어떤 계층이 될 때 보다 경제적인가를 기능배분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기능에 대한 처리주체로 어떤 계층이 선정될 때 경비절약, 행정능률, 수요자 편익, 행정편의 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각 계층별 기능배분을 도모한다는 것임
- 기능의 중복성을 기능배분의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이는 3개의 각 계층별로 중복되어 있는 기능들은 우선적으로 최하위 계층

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각 계층별로 중복된 기능 중에서 전술한 영향범위의 기준에서 최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 계층의 기능으로 반드시 배분할 필요성이 인정된 것 이외에는 최하위 계층으로 기능을 배분하는 것임
- 기능의 수행능력을 기능배분의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이는 3개의 각 계층을 대상으로 특정기능의 수행능력이 구비되어 있는가를 기능배분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재정능력 등에 비추어 특정기능의 각 계층별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광역계층의 기능배분 판단기준

- 다계층인 3개 계층을 전제할 경우 중간계층인 광역계층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기능들이 배분될 필요가 있음
 - 우선, 기관준립 기능은 각 계층을 불문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다음, 기능특성에 비추어 전국을 통할하는 최상위 계층과 소규모 지역별 단절된 최하위 계층이 수행할 수 없는 광역적 및 지역 형평적인 기능들이 배분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관특성에 비추어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연계기능과 최하위 계층의 통할기능들이 광역계층의 주요 기능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음

<표 3-1> 계층간 기능배분 기준

구분	배분기준	세부기준
중앙	기관유지성	- 기관존립
	종합성	- 종합계획성, 기준통일성, 자원관리성
	고도기술성	- 전문성
	통합성	- 조정성
광역	기관유지성	- 기관존립
	광역성	- 광역서비스성, 지역연관성
	보완대행성	- 기초 형평성, 기초지원성
	지도감독성	- 분쟁조정성
	연락조정성	- 업무협력성
기초	기관유지성	- 기관존립
	현지성	- 수요자 편의, 접근용이성
	대응성	- 운영 효율성, 지역특성

【지방자치법상의 광역단체 사무】

-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제3절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설정

○ 이상과 같은 틀에 따라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설정하면 아래와 같음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자치구 등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있는 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건강가정사업의 제공이라는 기능은 어떤 계층의 건강가정지원센터라도 담당해야 할 기능이라 할 수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업의 영역과 목적은 아래 그림과 같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2008).

<그림 3-1> 건강가정사업의 영역과 목적

01 공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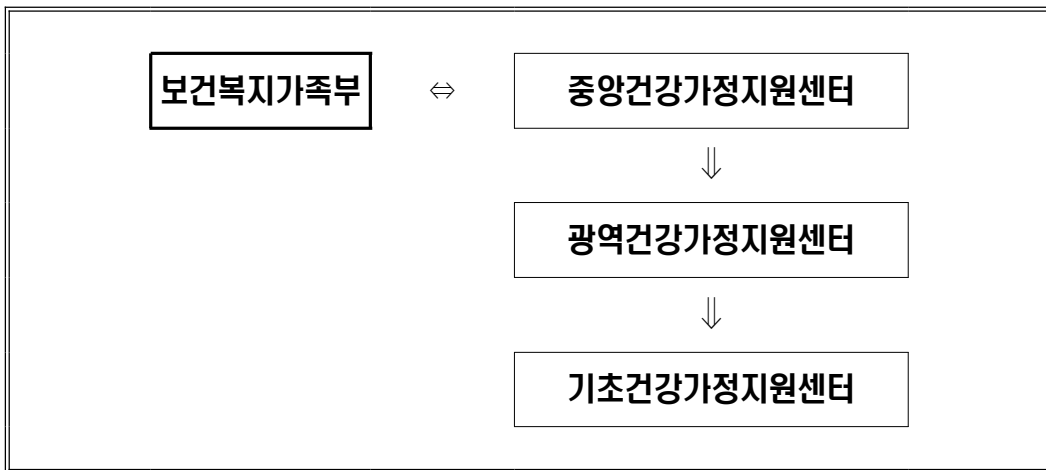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계층구조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층적 구조로 편제되어 있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일종의 정부업무 위탁기관임
-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역적 분할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역 및 기

초자치단체와 업무연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적 구조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앙단위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광역단위에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리고 기초단위에 기초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결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계층구조는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의 계층구조로 편제되어 있음

<그림 3-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계층구조



3.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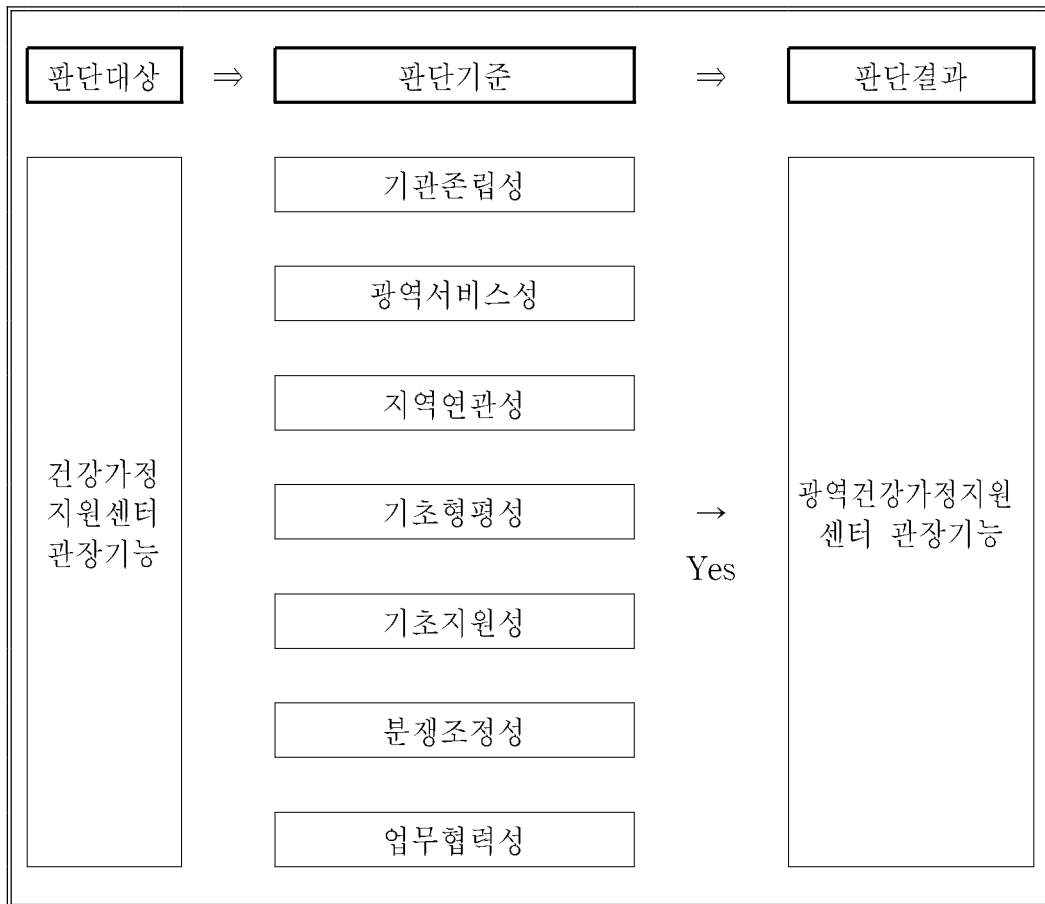
○ 관장기능 판단모형

- 광역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의 정립은 다음과 같은 판단모형에 의거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음
 - 광역건강가정센터의 관장기능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모집단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위탁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체의 기능이 그 대상이며
 - 이들에 대하여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을 도출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기관준립성, 광역서비스성, 지역연관성, 기초형평성, 기초지원성, 분쟁조정성, 업무협력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각 기준별 충족도를

판단하며

- 각 판단기준별 충족도가 확보된 기능은 최종적으로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으로 확정하는 것임
- 원칙적으로는 중앙-광역-기초별 전체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각 계층별 기능을 배분하고, 그 결과로 광역단위 기능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여기에서는 광역단위 관장기능의 검토에 국한함으로써 앞의 판단모형에 의거 관장기능을 도출함

<그림 3-3>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관장기능 판단모형



○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

-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은 중앙-광역-기초단위간 연계 속에서 광역

- 단위의 기관특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관존립성의 기준에서는 광역단위의 기구가 효율적인 기능수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기능과 유지기능이 필요하며
 - 광역서비스성의 기준에서는 기초단위를 초과하는 사업수행 기능이
 - 그리고 지역연관성 기준에서는 광역단위별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기능이 필요하며
 - 기초형평성 기준에서는 정책대상 전체가 최소수준의 수혜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기능이,
 - 기초지원성 기준에서는 기초단위가 한계를 갖는 기술, 자원 및 정보 등의 제공기능이 필요하며
 - 분쟁조정성 기준에서는 기초단위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기능이
 - 그리고 업무협력성 기준에서는 각 계층단위별 업무협력 지원기능이 필요함

<표 3-2>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

판단기준	관장기능
기관존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의 사업수행의 계획수립 ■ 유지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의 인사, 예산, 정보 등의 관리기능
광역서비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위 초과사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기능 중 기초단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기능 (시·도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과 연계)
지역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별 특성사업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별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건강가정지원사업
기초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셔널미니멈이 필요한 수혜서비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대상의 거주지 분포에 무관하게 수혜되는 사업기능
기초지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위의 사업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위에서 한계가 있는 기술, 자원 및 정보의 지원기능
분쟁조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위간 갈등조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 및 자원 등에 관한 기초단위간 갈등의 조정기능
업무협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기초간, 기초단위간 업무연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단위와 기초단위간, 기초단위 상호간 업무협력의 지원 기능

- 이상과 같은 결과에 따르면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임
 - 기획 : 광역 단위 건강가정 사업의 기획
 - 사업 수행 : 광역 차원의 건강가정사업, 광역 차원의 특성사업 등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사업 지원, 갈등 조정 등
 - 연계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제 4 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분석**

제4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분석

제1절 분석결과

- 본 연구사업에서 주목하는 바,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 면접대상과 면접기간은 아래와 같음.
 - 면접대상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1인) +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과 실무자(4인) + 외부전문가(여성/가족 관련 연구기관, 행정 관련 연구기관, 보육 관련 전달체계 시설장 5인) : 총 10인
 - 면접기간 : 2008년 8월-9월
- 면접에서는 도구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질문지는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성되었음.
 - 현 가족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견해
 - 각 전달체계가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기능에 대한 견해
 - 전달체계의 수행기능 중 유사기능과 차별화된 기능
 - 전달체계 간 연계와 역할분담
 -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여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가족정책 전달체계

- 현재 중앙의 보건복지가족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가족정책 전달체계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센터-광역 센터-자치구 센터로 연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아래와 같이 종합할 수 있음.
 - 우선, 건강가정기본법에 이러한 3계층으로 운영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 다만, 이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대부분이 운영 중인 상태에서 설치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3계층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특히 이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명확한 평가기준과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보급한 상태라는 점에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이 애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임.
 - 2007년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해 왔음.
 - 그러나 광역 센터가 설치된 현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센터를 대상으로 수행했던 역할 중 일부는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중앙-광역 센터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임.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전국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러한 지자체 센터를 다 관리하고 관장할 수는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명확한 역할 규명이 시급함.
- 현재의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기능과 효과성의

차원에서 전달체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는 아래와 같이 정리됨

- 모든 응답자들이 모든 계층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고유의 역할과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달체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현재의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만약 축소한다면, 시기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가장 나중에 생긴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소수 발견됨
 - 그 이유는 건강가정사업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나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메뉴얼’을 보고 그대로 사업을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센터의 관리와 지도를 받을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임
- 이와는 반대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담당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중앙센터의 축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소수 있음
 - 지역센터의 관리와 평가라는 입장에서는 중앙센터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하지만, 향후 센터운영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중앙센터 없이 광역센터만으로도 일정정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는 여전히 중앙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
- 또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로 건강가정정책관련 사항을 일괄 조정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중앙센터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으므로 지금과 같은 3계층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장기적으로 중앙센터의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내 산하 연구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향후에는 건강가정사의 국내외 역할 및 위상도모를 위해 자치구-광역센터가 주기능 전달체계가 되고, 중앙센터의 기능을 대신하여 건강가정사협회(법인체) 등이 활성화 되어 건강가정사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압력 및 권익옹

호, 건강가정실무자의 교육훈련단체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도 있음

- 이와 같이 응답자들은 현재와 같은 3계층으로의 가족정책 전달체계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축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음.
- 특히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주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전달체계로서 그 지속적 존치성은 어느 상황에서도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계층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수적인 기능

가.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우선적인 핵심기능과 필수기능에 대한 견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가족정책수립
 -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 발굴
 -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방향 설정, 전달체계 간 연계 및 조정
 - 관련 법규 제·개정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 가족영향평가지표 개발 및 실시
 - 전국적 차원에서의 가족실태조사
- 건강가정사업 홍보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반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이는 중앙, 광역,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 등에 비추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가

해야 할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 것임

-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및 예산 확보
 - 제도적 장치 마련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사업 효과성 제고, 위상 정립에 도움을 주어야 함
 - 자치구(구청)에 건강가정사업 전담하는 공무원의 배치를 위한 근거체계 마련
 -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의 제도화
 -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중앙 차원의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
 - 센터의 조직 및 운영지침(예산지침, 특히 전국 통일된 인건비 지급기준등)
 - 네트워크 구축
 - 여성부, 노동부 등 가족관련 부처 간 네트워크 구축
 - 건강가정사 자격 관리
-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기능은 가족정책 개발/수립과 연구, 홍보, 예산확보, 건강가정사 자격관리 등으로 수렴될 수 있음.

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우선적인 핵심기능과 필수기능에 대한 견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방향 설정과 연구개발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의 연간 방향 제시
 - 가족정책 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실시
 - 전국 단위 조사 및 연구
 -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건강가정정책의 틀 마련 : 가족정책 연계 및 조정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해야 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
 - 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시할 건강가정사업의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 가족정책 성과 보급 및 홍보
 - 건강가정정책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 가족지원 관련 기초 통계 산출 및 연구, 가족실태조사
 -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R&D 역할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가족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구체적인 운영가이드라인 마련
 - 건강가정 포털시스템 관리 및 운영
 - 기업 파트너 발굴 및 확산, 각 센터와의 연계지원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전산 지원 : 전국지역센터의 단일 전산망 관리(홈페이지, 실적, 성과등), 전국센터 사업과 연결시킬 E-Familynet 운영
 - 건강가정사업 공모
 - 홍보
 - 전국사업보고대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표준화 모델작업(프로그램 개발, 동영상, 표준교안 마련 등)
 - 전국센터 표준 사업계획서(전국센터가 일부사업 동시 동일진행시의 홍보를 위해)
 - 센터에서 시행되는 단위사업(아이돌보미, 한부모사업 등)에 대한 관리
- 연계 :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간의 연결고리
- 개별센터의 운영현황 및 실태의 체계적 보고를 통한 중앙부처와 개별센터의 연계와 소통
- 광역/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관리 및 평가
- 전국의 센터 실적 총괄 관리, 활용, 홍보 및 평가

- 광역 및 자치구 센터 평가 지표 개발 및 광역센터 평가
 - 광역,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시스템 관리 : 평가위원관리
 - 광역 센터 운영지원 및 공동사업 주관
- 건강가정사 관리체계 운영
- 양성 및 파견
 - 자격관리
 - 종사자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 질 관리를 위한 재교육
 - 종사자간 네트워크 구축
 - 건강가정사협회 구축 및 지원
 - 건강가정사에 대한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가족정책 기획 협의 아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방향 정립, 연구개발, 광역 및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평가, 연계, 건강가정사 관리체계 운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다.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우선적인 핵심기능과 필수기능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 광역 단위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 광역 지역 가족정책 수립 지원 (연구 기능)
 - 광역 공동 사업 개발 및 시행
 - 자치구 정책 조정
 - 광역 지역의 가족실태조사(이슈제기형) 및 욕구조사

- 광역 지역 건강가정 관련 기초 통계 산출 및 연구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자치구 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벤치마킹 유도
 - 자치구 센터 공동사업 발굴 및 수행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보완적용 :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광역 지역 내 개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사업 결과물을 응용하여 건강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역할
 - 시군구 센터 운영지원 및 공동사업 주관
 - 프로그램 강사 양성 교육 및 강사DB 구축
 - 홍보
 - 실무자 교육 및 간담회(자치구센터별 특징 사업 발표 및 사업개선안 논의, 수퍼비전 등을 통한 사업경험 공유)
 - 단위사업 시행을 위한 자치구센터 교육지원(예: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가족봉사단 교육, 전화상담봉사자 교육 등) : 이를 통해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 완화에 기여
 - 자치구센터 동향 및 현황 관리, 현장방문
 - 자치구센터 사업지원(사업설명회 개최, 사업보고대회)
 - 신규센터지원방문(재위탁등으로 인한)
- 연계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
 - 중앙센터에서 연구, 개발한 사업을 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지역화 작업
 - 중앙센터 평가지표 개발과정에 자치구 센터의 의견 전달
- 자치구 센터의 거점 혹은 선도기관의 기능

- 지역 내 개별센터들의 구심점 역할
 - 비용, 역량 상 개별 센터가 개발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
 - 서비스 범위 및 자치구 센터 역할에 대한 중재 및 통합의 역할
 - 자치구 센터의 공통된 애로사항을 공유, 그 공동해결방식 모색
 - 광역 지역 단위 행사 기획 및 운영 : 문화사업 공동운영, 광역단위 프로그램 진행(캠페인, 시민축제, 봉사단 축제등), 가족친화문화조성 사업진행(공무원, 기업대상 가족친화교육, 문화프로그램진행)
 - 아이돌보미, 가정봉사원 등 전문 인력 교육 및 재교육 사업
 - 자치구내 프로그램 별 강사 풀 관리
- 종사자 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 간의 모임, 네트워크 구성 : 직위별, 팀별, 담당업무별 담당자 모임.
 - 정보 공유 및 연계
 - 자치구 센터 근무자 재교육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파트너 기업 발굴 및 연계 사업 실시
 - 관련 전문가 집단(단체)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 광역시 내 시군구 센터와 기업, 학교 등과의 MOU 체결 지원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은 광역 단위 정책개발과 연구,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연계,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선도 및 거점, 종사자 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라. 시군구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시군구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우선적인 핵심기능과 필수기능에 대한

전해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주민에 대한 건강가정 교육·상담·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정보의 제공,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 주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일차적 제공
 - 가족문화 활동
 - 공통필수사업 실시
 - 특화사업 실시
 - 아이돌보미 사업
 - 육아정보나눔터, 방과 후 등 돌봄지원사업
 - 결혼이민자사업
 - 한부모사례관리사업
 - 조손가족지원사업
 - 이혼가족지원사업
 -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사업
 - 기업을 연계한 가족친화경영관련 사업(가족친화문화조성법에 의한 사업)

- 자치구의 특성 및 주민의 요구도 파악
 - 사회인구학적 특성, 관련 기관의 위치와 하는 사업의 내용 파악, 건강가정 사업에 대한 홍보, 주민의 요구도 파악을 위한 조사
 - 시군구 가족단위 가족실태조사

- 지역사회 관련 전달체계 협력체계 구축
 - 지역부문 및 다양한 자원들의 연계를 통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전문 기관과의 연계

- 실적 보고와 상부기관 협조
 - 연간 사업계획 및 월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보고

- 월별, 분기별, 상하반기별, 연간 실적을 구청, 중앙센터 및 서울시 등에 보고
 - 동향보고
 - 사업 실시 후 중앙 및 광역 센터에 결과 피드백
 - 상부기관(구청, 시청 등)에서 요청하는 정보 제공 및 사업 실시
 - 상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계층 중 마지막 단계인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이며, 그 밖에 해당 지역 실태 및 요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실적보고와 상부기관 협조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표 4-1> 계층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수적인 기능 요약

계층	필수기능
중앙부처	가족정책 개발/수립과 연구, 홍보, 예산확보, 건강가정사 자격관리 등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방향 정립, 연구개발, 광역 및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평가, 연계, 건강가정사 관리체계 운영 등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광역 단위 정책개발과 연구,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연계,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선도 및 거점, 종사자 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기초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이며, 그 밖에 해당 지역 실태 및 요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실적보고와 상부기관 협조 등

3.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 역할

- 앞에서는 계층별 전달체계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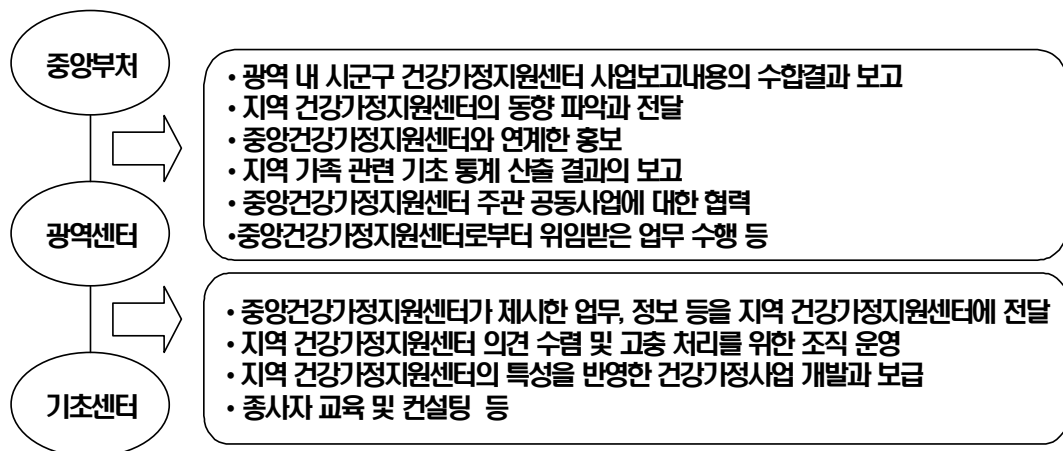
- 계층별 전달체계 간에는 일정한 연계의 역할이 요구됨. 특히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와 매개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바, 아래에서는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계의 업무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함.

- 중앙-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관계에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 역할
 - 광역 내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보고내용의 수합결과 보고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동향 파악과 전달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의견을 대변하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달 :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피드백 제공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지침 등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견 전달 : 기본운영지침과 평가 등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기능들이 광역권역의 실정에 부합되는 것인지,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전달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한 홍보
 - 지역 가족 관련 기초 통계 산출 결과의 보고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 공동사업에 대한 협력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수행 : 전문가 양성교육, 근무자 교육, 인력풀 구축 등

- 광역-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관계에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 역할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연계 역할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시한 업무, 정보 등을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달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의견 수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조직 운영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가정사업 개발과 보급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업무조율을 통해 광역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개

- 발과 운영,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급
- 광역 단위 공동사업의 기획 및 조율
 - 지역 내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협의체 운영
 - 네트워킹하는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및 제공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각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권역별로 공동 해결/자구책을 모색하는 기제 마련
 - 지역 내 가족 관련 기초통계 산출결과의 보고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의견수렴 및 조정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그림 4-1>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역할



4. 평가의 기능

- 2007년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직접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업무를 주관하여 왔음.

- 2007년 광역 단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 기능에 대한 견해를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함.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기능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이견의 여지가 없음.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국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평가의 주체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여야 함.
 - 지금까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에 주력해 왔으므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를 위한 지침 개발, 담당인력 배정, 전문가 풀 확보, 관련 예산 배정 등의 업무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평가는 평가대상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토대하여야 하므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를 위해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와 현황 그리고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할 것임.
 - 이는 곧 본 사업에서 주목하는 바,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 상술한 바와 같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평가라는 맥락에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국 모든 광역 단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는 시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예컨대 적어도 5개 이상의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시점 등에 대한 선택이 필요함.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평가하는 경우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예: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 광역자치단체 관할부서, 가족정책위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평가위원, 가족정책 전문가 등)하여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여기에서 광역자치단체 관할부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중앙과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간의 업무기능이 상호 중복되어 있으며, 현재에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민간 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임.
 - 따라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평가위원회에 포함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미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기능도 그 일련의 연속선 상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소수(2인)는 이를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의 주체가 되는 근거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적 단위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평가함으로써 전국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준과 질에 대한 분석, 비교가 가능할 것임.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평가하면 지역의 특

성을 고려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전국의 센터에 대한 상황과악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임.

- 전국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건강가정사업의 실체가 잘 드러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평가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
 - 이를 통해 건강가정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감 제고, 사업 성과의 정리와 분석, 사업변화 추이 분석 및 향상된 기법 보급,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전략 등에 대한 진단 및 분석,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 제시 등 후속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원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전국 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과 지침 마련은 물론 지속적으로 평가지표 개선을 주도해 왔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통의 평가지표를 통해 전국의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평가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이 가족단위의 통합적 서비스로 일관된 질을 유지하면서 제공될 수 있는데 기초가 되어 옴.
 - 지금까지 3-4년 간 매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평가해 온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평가방식(서면, 현장 등)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평가를 주도해야 함.
 - 전국에 걸쳐 모든 시군구 및 시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면, 특히 수백개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가 과도한 업무를 초래할 것이므로,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평가기능의 위임, 분담 혹은 평가방식의 단순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의 주체가 되는 근거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중앙 혹은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 평가의 주체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함.
 - 점점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증가되고,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많아지면, 평가의 기능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광역 건강

가정지원센터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평가하고,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해당 지역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평가하는 식으로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임.
- 이처럼 평가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평가 결과의 반영, 인센티브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부문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체로의 시행 추이에 근거하여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관할 부서의 지도점검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이를 객관화, 발전화, 정책조정과 제안을 도모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은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시점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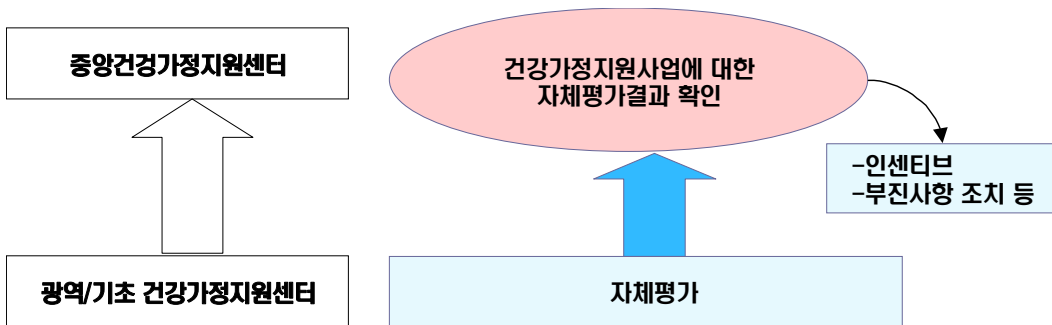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 역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전국적 차원에서의 성과 분석과 제시, 평가의 효율성,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는 평가의 경험 역량, 건강가정사업의 일관된 질 유지 등의 차원에서 그러함.
- 그러나 전국 모든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는 시점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는 평가업무의 부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등의 차원에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기능을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으로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평가방법에 대한 새로운 고민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방법에는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의 두 가지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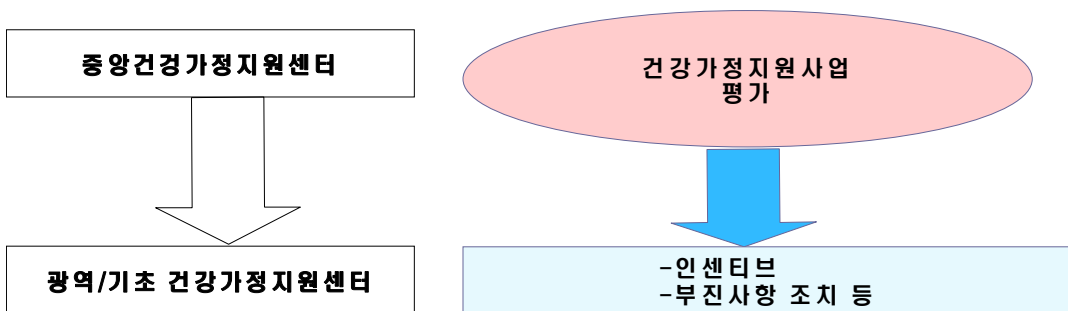
- 두 가지 방법 중 건강가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방법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함
- 상향식 평가방법은 광역과 기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자체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위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함

<그림 4-2> 상향식 평가모형



- 하향식 평가방법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일정한 평가지표에 의하여 광역/기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직접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함
- 현행 평가방식을 의미함

<그림 4-3> 하향식 평가모형



- 두 가지 접근방법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떤 접근방법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릴 수 없음

- 다만, 두 가지 접근방법 중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접근방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건강가정지원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광역/기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역량이 제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향식평가방식을 채택하되 장기적으로는 상향식평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하향식평가방식은 획일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건강가정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인정됨
 - 상향식평가방식은 건강가정지원사업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인정됨
 - 다만, 초기에는 건강가정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의 성과파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향식평가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절 분석과 논의

- 위와 같이, 계층별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분류해 보고 연계의 역할을 정리한 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를 도출하면 아래와 같음.

1. 논의점

- 계층별 가족정책 전달체계인 보건복지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광역(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아래와 같은 논의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정책수립의 기능
 - 정책수립의 기능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외한 모든 전달체계의 공통된 기능으로 나타남.
 - 그러나 계층별로 정책수립 기능의 내용은 차이를 보임.

-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수립 기능은 보편적이고 통합적 차원에서의 가족정책 기획과 수립을 의미함.
 - 그리고 이 기능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을 근간으로 하여, 관련되는 국가 정책의 발굴과 관련 법규의 제·개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계획, 예산확보, 가족영향평가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내용임.
 - 이에 비하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책수립 기능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방향성의 제시라는 맥락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연계하여 가족정책의 기획 및 조정하는 내용으로 축약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가족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가정사업의 개발과 이를 위한 연구, 가족정책의 성과 보급과 홍보, 관련 조사연구, 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산출과 연구 등의 세부적 기능으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책수립 기능은 이를 위한 연구개발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책수립 기능은 보다 구체적으로 광역 단위의 지역과 관련된 가족정책 수립과 이를 위한 연구, 광역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조정 등으로 수렴될 수 있음.
- 대주민사업의 기능
- 대주민 직접적인 사업의 수행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임.
 - 그러나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광역 단위 행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며, 이로써 대주민사업의 기능의 일부를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 홍보
- 홍보의 기능은 모든 전달체계에 공히 나타나는 기능이나 그 세부적인 내용

에서는 차이가 남

- 보건복지가족부의 홍보기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보편적인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대규모의 대국민 홍보를 중점으로 하며, 이는 예산과 인력 등에 비추어 다른 전달체계가 수행하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홍보기능은 광역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이라는 주요 기능의 하위요소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전국적이고도 공통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기능이라고 하겠음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홍보기능은 해당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기능의 일부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해당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적인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홍보를 의미하는 것임.
- 이에 비해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홍보기능은 정규적인 뉴스레터나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건강가정사업을 알리는 측면이 보다 부각됨.
- 또한 가정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를 통해 홍보의 효과를 함께 도모하는 것을 포함함.

-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구축 역시 모든 전달체계에 공히 적용되는 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계층별로 그 내용은 차이가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의 네트워크 구축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가족정책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되는 다른 정부부처와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가족정책 수행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기능의 일부로서, 기업파트너를 발굴하여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일한 계층의 유관기관과 협약 및 연계를 형성함으로써,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

원에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해당 유관기관의 동일한 계층 전달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됨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기능은 광역 지역 내 관련 전문가 집단(단체) 및 기업과의 연계, 지역 내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사회 내 가족 서비스 관련 전달체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며,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전문 기관과의 연계(서비스, 이용자 등)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인력관리

- 건강가정사 및 종사자 관리는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전달체계가 공히 수행하는 기능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인증자격으로서의 건강가정사 자격을 관리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함.
- 따라서 건강가정사 인증제 관리, 자격 부여, 관련되는 교과과정, 자격관리 위원회 등의 세부적 기능으로 구성됨.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건강가정사 자격관리의 기능을 갖는 바,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가정사 자격관리 기능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료됨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의 관리체계에 초점을 두는데, 건강가정사 양성¹⁾ 및 파견, 건강가정사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기회 제공, 건강가정사협(의)회 구축과 지원, 건강가정사 복리증진 등의 세부역할로 구성됨.
- 따라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적 차원에서 전체 건강가정사의 인적 자원개발, 관련되는 조직 구성, 권익 증진을 위한 규정과 지침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2005년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초기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년에 걸쳐 건강가정기본법 경과조치에 따라 건강가정사 양성교육을 실시함.

- 이에 비해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종사자관리라는 기능 속에서, 해당 지역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로 구성되는 조직 구성과 운영, 이를 통한 정보공유와 연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자 재교육 등의 업무로 세분화됨.
 - 특히 건강가정사 교육, 재교육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임.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 리더십 교육, 신입직원 공통교육, 실무자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 설명회, 워크샵, 사업발표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전국의 건강가정사들이 업무별, 역할별, 직위별로 공히 획득하여야 할 내용의 전달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 이에 비해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해당 지역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현장 적용 가능한 교육기회의 제공, 종사자들 간의 공동체 모임 지원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가족실태조사기능
- 가족실태조사 기능 역시 모든 계층별 전달체계의 공통 기능으로 나타남.
 -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명시된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명시된 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광역자치단체의 장(시장, 도지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가족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는 가족실태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조사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기능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위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광역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지역을 그 범주로 하며, 따라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족실태조사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족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2. 중앙/광역/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유사기능과 차이기능 분석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역할과 기능 분담

-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주민 사업이 우선이 아니라 정책수립, 프로그램 개발, 센터 및 종사자 관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 또한 중앙/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유사기능을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연구와 교육 등에서 나타나지만, 그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 결과적으로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밀접한 관계 하에 일을 추진하고, 서울시센터는 자치구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일을 해야 한다는 점임
- 그래서 같은 종류의 일이라도, 중앙은 주로 정책 마련과 사업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전국 실적관리 및 전국 센터 평가, 건강가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치중하고, 서울시센터는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의 실적 취합 후 상부 보고, 서울의 21개 자치구센터에서 종사하는 건강가정사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일을 하면 됨
- 또한 종사자 교육이나 상담 관련 슈퍼비전 등의 경우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도하나,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서로의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인정해주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은 네트워크 및 사업의 효과성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며, 이 업무는 중앙/광역 공히 추구할 필요가 있음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역할분담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이나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을 공동 주관하면서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건강가정사업 영역별 분담
 - 가족생활교육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주민 직접 교육 실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 내 파견 가능한 강사양성 및 강사 DB 구축하여 관리하는 기능 수행
 - 가족상담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직접 상담의 업무를 수행,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슈퍼비전과 상담 기법 향상 워크숍 등으로 역할을 분담.
-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는 고유한 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음.

**제5장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제5장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 앞에서는 계층별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 특히 중앙-광역-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및 역할의 분담에 대한 논의점을 제시하였음.
- 이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먼저 앞에서 정립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요약한 다음,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한 상황을 분석해 보고, 이에 기초하여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자 함.

제1절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

1. 이론적 논의결과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 정립을 위한 이론적 틀에 따라 도출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아래와 같음
 - 기획 : 광역 단위 건강가정 사업의 기획
 - 사업 수행 : 광역 차원의 건강가정사업, 광역 차원의 특성사업 등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사업 지원, 갈등 조정 등
 - 연계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2. 전문가 및 실무자/관련자 심층면접결과

- 전문가 및 실무자/관련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렴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적 기능은 아래와 같음
 - 광역 단위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연계
 - 자치구 센터의 거점 혹은 선도기관의 기능
 - 종사자 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러한 기능 중 우선적인 주안점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중앙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라고 할 수 있음.

3. 연계의 역할강조에 의한 분석결과

- 연계의 역할을 부각시킬 때,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은 아래와 같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역할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동향, 관련 정보 등의 전달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피드백 제공
 - 공동사업 협력
 - 기타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역할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시한 업무, 정보 등을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달

- 지역 특수성 반영한 건강가정사업 개발과 보급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한 조직 운영
-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의견 조율
-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제2절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한 특수성

-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한 특수성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시기적 특성

- 2005년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된 후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음
- 따라서 2007년도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 서울지역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과 평가를 받았으며, 일정한 정도의 연계를 유지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위상 정립이 수월하지 않은 시기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는 예컨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소관부서에 따라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력 사업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방향성과 조율되지 않을 가능성과도 존재함.

- 따라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지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동시에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의 역할을 명료화하여,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긴급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겠음.

2. 기관의 특성

-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의 지원금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따라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전달체계라는 특성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특별시의 가족정책 전담부서는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으로서 서울시 가족정책개발에 대한 요구, 직접 사업에 대한 요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예컨대 서울특별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정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할 사명이 있음.
-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가족정책, 그리고 이러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조정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급, 제시하는 공통/필수사업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수행하는 사업이며,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

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하나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연계되는 경우,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입지도 안정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 한 경우,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과 입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3. 규모의 특성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규모와 수가 타 광역자치단체와 다르고, 서울특별시의 특성 상 자치구마다 예산 규모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관심, 관심사업의 규모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어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총괄적인 기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경기도와 더불어 가장 많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있지만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아직 명확하지 않음.
 - 특히 서울특별시의 가족실태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요구 등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혹은 공통의 특성으로 회귀되기에는 자치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고유의 가족서비스 개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건강가정사업 보급 등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음.

제3절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 이상과 같이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기능에 대한 규정,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음.

1. 핵심기능

-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겠음.
 - 이 지원의 역할 속에는 보편적인 지원의 내용 뿐 아니라 중앙-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한 지원, 지역 선도기관으로서의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한다고 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적 지원 : 종사자 지원, 사업 지원, 운영 지원, 연계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지원기능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종사자 지원
 - ① 근무자 역량 강화(기획, 관리, 사무 등)와 애로사항 해소
 - ② 근무자 조직목표 동일시(정체감, 근무만족도, 자부심 등)를 위한 기회 제공
 - ③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 ④ 실무자 교육 및 간담회, 수퍼비전
 - ⑤ 기타 근무자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과 실행 (봉급, 채용과 승진 등)

 - 사업 지원
 - ① 프로그램 워크샵, 사업별 전문교육, 우수프로그램 소개
 - ② 강사풀 구축과 연계
 - ③ 아이돌보미, 가정봉사원 등 전문 인력 교육 및 재교육
 - ④ 중앙에서 제공한 매뉴얼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 ⑤ 우수프로그램, 공동사업 발굴 및 벤치마킹 유도
 - ⑥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⑦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보고대회
 - ⑧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대규모의 문화사업, 행사 진행

- 운영 지원

- ① 공익요원/자원봉사자 연계
- ② 법률 자문
- ③ 보조인력 발굴 및 연계
- ④ 건강가정지원센터 홍보
- ⑤ 평가 조력
- ⑥ 신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방문²⁾

- 연계 지원

- 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시한 공통/필수사업 설명, 구체적인 매뉴얼 적용 방안 제시를 통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역량 강화
- ②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선정(공통/필수사업, 시범사업, 정책사업 등)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렴된 의견 전달을 통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운영 지원
- ③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체계 운영에 있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견 전달, 이를 통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대응능력 향상
- ④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와 조정

⇒ 상술한 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기능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귀속되고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기능이 가장 우선적이고도 핵심적인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위에서 제시한 지원의 기능 중 평가조력,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중앙-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와

2)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미 대부분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신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 방문하여 설치 초기의 안정화와 위상 정립에 기여하는 기능은 부합되지 않음. 그러나 아직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경우,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신규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초기시점에 지원방문을 통해 조력하고 컨설팅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음.

조정 등의 기능은 향후 보다 부각될 필요가 큰 것으로 보임.

평가조력과 지원방문을 통한 조력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기능, 위상을 긍정적으로 정립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근본적으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편적 기능이 중앙-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인 바, 타 지역보다 다수의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달하고, 동시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지침과 정보 등을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적시에 제공하는 연계의 기능은 포괄적인 지원의 기능에 부합되는 것임.

나아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숫자가 많고 이로써 다양성이 부각되는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의견 조정과 연계, 이를 통한 협력공동체 구축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 예상됨.

따라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와 조정의 기능을 적절히 확보한다면 이는 견고한 위상 정립과 지속적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이는 나아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2. 기타 기능

-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러한 핵심적 기능 외에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가족정책 개발 및 관련 연구 수행
 - 서울특별시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가족실태조사, 기초통계 산출
 -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서울시 가족정책의 방향성 제시
 - 서울특별시 시민의 가족정책 및 건강가정 관련 요구도 조사
 -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 관련되는 정책연구 : 저출산 대응, 맞벌이 가족의 일-가족 양립, 돌봄노동의 분담, 가족친화문화조성 등을 위한 연구
- 서울특별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서울특별시 가족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
 -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 전문집단, 관련 단체, 학교, 보육시설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3. 종합

- 이상의 내용을 요약할 때,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음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적 지원
 - 종사자 지원
 - 사업 지원
 - 운영 지원
 - 연계 지원
-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기능의 다양한 내용 중 평가조력, 신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방문,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의견 조율 및 연계가 가장 부각되어야 할 지원기능으로 강조되었음.
 - 서울특별시 가족정책 개발과 연구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자원 개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건의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건의

- 앞에서는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관련되는 법규정 정리,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관장기능 정립을 위한 이론적 접근, 심층면접의 결과 분석과 논의점 도출 등의 과정 속에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였음.
- 아래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한 다음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함.

제1절 연구의 요약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 정립을 위한 이론적 접근에 따라, 조직의 기능, 계층별 전달체계의 기능 배정 원칙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도출하였음.
 - 기획 기능 : 광역 단위 건강가정 사업의 기획
 - 사업 수행 기능 : 광역 차원의 건강가정사업, 광역 차원의 특성사업 등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기능 : 사업 지원, 갈등 조정 등
 - 연계 기능: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 계층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한 바,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보건복지가족부의 핵심 기능
 - 가족정책 및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 가족실태조사
 - 건강가정사업 홍보
 -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및 예산 확보
 -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운영
 - 정부부처 간 네트워크 구축
 - 건강가정사 자격 관리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 기능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방향 설정과 연구개발
 - 광역,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보건복지가족부와 광역/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
 - 광역/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 및 평가
 - 건강가정사 관리체계 운영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 기능
- 광역 단위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가족실태조사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홍보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거점 혹은 선도기관의 기능
 - 종사자 관리와 종사자 간 네트워크 구축
 - 자치구 센터 근무자 재교육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 기능
- 대주민 직접적 사업 실시
 - 해당 시군구의 특성 및 주민의 요구도 파악, 가족실태조사

- 지역사회 관련 전달체계 협력체계 구축
 - 실적 보고와 상부기관 협조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 기능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앙-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 연계역할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연계 기능
 - ① 광역 단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보고
 - ②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 운영규정, 평가지침 등에 대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의견 전달을 통해 피드백 효과 창출
 - ③ 홍보와 사업 협력
 - ④ 기타 위임받은 업무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연계 기능
 - 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 정보 등을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달
 - ②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의견 수렴
 - ③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강가정사업 개발과 보급
 - ④ 광역 단위 공동사업의 기획 및 조정
 - ⑤ 지역 내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협의체 운영
 - ⑥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의견수렴 및 조정
 - ⑦ 종사자 교육
- 평가기능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임.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 역시 대부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는 고유한 기능

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논의점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이슈를 도출하면 아래와 같음.
 - 정책수립의 기능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외한 모든 전달체계의 공통된 기능으로 나타나나 계층별로 정책수립 기능의 내용은 차이를 보임
 - 대주민사업의 기능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임.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일부 대주민사업을 실시함.
 - 홍보 : 모든 계층별 전달체계에 공히 나타나는 기능이나 그 세부적인 내용에 서는 차이가 남
 -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에 공히 적용되는 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계층별로 그 내용은 차이가 있음.
 - 인력관리 : 건강가정사 및 종사자 관리는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전달체계가 공히 수행하는 기능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각각 상이함.
 - 가족실태조사 : 건강가정기본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계층별 전달체계의 공통 기능으로 나타나나 실태조사 대상과 범주에서는 차이를 보임.

-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립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편적 기능에 대한 규정을 토대로 하며, 동시에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한 특수성(시기/기관/규모)을 반영하여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도출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적 지원 : 종사자 지원, 사업 지원, 운영 지원, 연계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지원기능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종사자 지원 : 근무자 역량 강화, 애로사항 해소, 업무능력 향상 지원, 교육과 수퍼비전,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 사업 지원 : 프로그램 워크숍, 사업 교육, 우수프로그램 소개, 인력풀 구축,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소개

- 운영 지원 : 인력 연계, 자문, 홍보, 평가조력, 지원방문
 - 연계 지원 : 중앙-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연계,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 서울특별시 가족정책 개발 및 관련 연구
 - 서울특별시 가족정책 수립,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 마련
 - 서울시민 요구도 조사
 - 정책연구
 - 서울특별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

제2절 정책적 제안

-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요구되는 기능과 관련된 결론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음.
 -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 기능 정립
 -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공적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앙-광역-시군구의 계층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각 계층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을 도출한 결과, 정책 수립·홍보·네트워크구축·가족실태조사·인력관리 등의 기능은 그 대상과 범주, 내용은 다르나 계층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능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기능을 종합할 때, 고유기능의 도출도 가

능함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고유 기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라고 규정할 수 있음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고유 기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사업의 수행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이에 대응되는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고유 기능은 과연 무엇인가를 탐색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시기적으로 중앙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미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그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기능을 규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 대부분의 기능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중첩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고유 기능 정립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음
- 또한 향후 전국 광역시도에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될 것을 예상할 때,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고유기능을 정립하여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합리적 모델을 제시해야 할 긴급성도 크다고 하겠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핵심적인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강조하였음.
- 지원의 기능은 종사자 지원, 사업 지원, 운영 지원 그리고 연계 지원으로 구분하여 세부적 내용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지원의 기능 외에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편적 기능으로 광역 단위 가족정책 개발과 연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보편적 기능에 착안하여,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게 요구되는 보다 핵심적이고도 고유한 기능을 추출할 때,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특성,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규모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의 기능 중에서도, 평가 조력,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와 조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

그럼 개발과 보급, 중앙-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등 4가지 하위 기능을 선정하였음.

- 평가조력 기능은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선도적 기능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머지 세 가지 기능은 다른 광역 건강지원센터도 공히 수행하는 보편적 기능이지만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더욱 요구되는 기능으로 규정함.
- 이 4 가지 하위기능을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선정한 배경은 아래와 같음

-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의 기능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귀속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에 버금가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 다수의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일정한 가족서비스의 품질을 유지, 그리고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 내는 데 기여하는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조력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명확한 평가조력의 기능을 통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의 기능을 부각시키면서 견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평가조력의 기능은, 향후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평가의 기능 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평가조력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임.

- ② 기초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와 조정의 기능은 모든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적용되는 보편적 기능이면서, 동시에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더욱 부각되는 내용임.

많은 숫자의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의 특성, 위탁기관, 설치배경, 자치구 단체장의 의지, 전담조직 등의 다양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와 조정의 기능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상호간 업무협력을 지원하고, 업무별·직위별·사업별 모임을 주관하며, 시범사업 등의 배분을 조정하고,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상이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정체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더욱 요구되는 기능이라 하겠음.

- ③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모든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편적 기능이면서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황을 고려할 때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부각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그 위탁기관의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적용되는 추세임.

이에,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화를 인정하면서도 격차는 줄일 수 있는 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송혜림 외, 2008).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다양성을 담보하면서도 서울특별시의 가족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서울특별시의 독자적인 가족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바, 이 기능은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이라고 하겠음.

또한 이는 앞에서 도출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장기능 중, 지역연관성의 차원에 부합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 ④ 모든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계층적 특성에 따라 중앙-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라는 기능을 근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바,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업무협력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업무 연계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임.

이는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관 특성에 비추어,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연계기능이 주요 기능으로 부각되기 때문임.

특히 서울특별시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치구 수 대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비율이 현격히 높음.

따라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달하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지침과 사업, 정보 등을 다수의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소통과 연계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며, 이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방향과 전국적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평가조력 기능을 위한 방안 마련
 - 앞에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선도적 기능으로 평가조력을 선정하였음.
 - 평가조력 기능을 통해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기여도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① 평가조력 전담팀 구축

-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평가조력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해야 함.
- 이 조직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활용하는 평가지표를 숙지하고, 평가체계 운영 방안에 따라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평가에 임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함.
- 또한 평가조력 전담팀에서는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들과의 연계체

계를 구축함으로써 평가조력의 내용과 질을 담보해야 할 것임.

② 관련 예산 확보

- 평가조력을 위해서는 모든 평가대상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방문과 지원, 정보 제공,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함.
-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비의 일정한 비율 확보함으로써, 평가조력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③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

-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평가조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주체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임.
-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평가조력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입지와 위상을 확고히 인정하고,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체계 운영 전반에 걸쳐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조력 전담팀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됨.
- 또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앙-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라는 차원에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가지표가 개발되며 평가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평가역량제고 노력

- 단기적으로는 하향식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향식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할 때 중앙-광역-기초 모두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 상향식평가방식을 지양한다고 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평가 등과의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서울특별시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로 평가대상, 지표 등을 계획수립 이전에 시달해주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특별시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상, 지표 등을 시달하여야 할 것임

⑤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센터가 설립되고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기초센터가 설립될 경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모든 평가를 주관할 수는 없을 것임
- 점차적으로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 관련분야 전문가 풀을 구성한 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충분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 정립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안
 - 상술한 바와 같이,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의 지원금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가족정책 추진의 핵심 전달체계로 기능함.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시정 운영방침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가 요구하는 관련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계층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일정한 정도 연계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요구됨.
 - 이러한 상황적 측면에서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선도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의 기능을 보다 견고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주체인 보건복지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합치되는 정책 방향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특별시 간 합의되는 가족정책의 방향과 공유점을 담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다른 지역의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광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방식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금의 출처와 배분, 핵심 기능과 고유 기능, 위탁 여부 등의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후속 연구의 주요 과제라 하겠음.

참고 문헌

참고문헌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금창호 외(2008). 2008 조직진단연구. 충청북도
- 김경신 외(2007), 통합적 가족정책을 위한 과제 및 가족지표 개발, 정책기획위원회
- 김병국(2003).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기능 재조정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승권 외(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보건복지부 위탁연구보고서.
- 김양희 외(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보건복지부. 정재훈 외(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정방안 연구
- 김영수(1995).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재훈(2004). “중앙과 지방간 기능재배분의 논리, 현황과 전망.” 한국행정학회 월례발표문.
- 라휘문 외(2007) 건강가정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연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보건복지부(2004). 보육정보센터 기능 강화 방안.
- 송혜림 · 이미선 · 송말희 · 이종남 · 김연화(2008).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송혜림, 장진경(200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여성부(2004). 보육사업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 이승미 외(2005), 중앙, 시·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및 체계구축,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장진경 외(2006a),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모형개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장진경 외(2006b),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자의 역할 인식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전국보육정보센터협의회(2007). 보육정보센터의 발전방안 연구.

정재훈 외(2005). (중간보고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위탁연구 보고서.

중앙보육정보센터(2006). 전국보육정보센터 사업보고대회 ‘보육의 비전! 보육정보센터와 함께’ 자료집.

중앙보육정보센터(2008). 2008 보육정보센터 발전방안 토론회.

부록

부 록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

여야 한다.

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2조(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13조(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①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3. 건강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관리에 관한 기본방안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7. 그 밖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④중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중앙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 및 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도 건강가정위원회) ①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건강가정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시·도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 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②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8.2.29>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연구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

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혹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가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

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29조(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가정봉사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

다.

②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8.2.29>

제5장 보칙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7166호,2004.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로 한다.

제34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으로 한다.

③내지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모·부자복지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③까지 생략

⑤③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⑤④부터 ⑦⑥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록 2.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2007.01.02 조례 제4454호 (제정)

2007.12.26 조례 제459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 건강가정기본법 ·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울특별시건강가정위원회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건강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장 및 해당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12.26)

1. 시의회 의원
 2.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4.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가정 관련 상담 및 활동을 하는 자
-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11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교육·가정문제상담 및 가족생활문화운동 전개
2.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3.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지원·평가 및 가정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2조 (조직)

- ①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 ②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 및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 ①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의 위탁)

-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 등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 ③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제1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07.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을 “복지국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9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의 국장 1인”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하고, 제9조 중 “환경국”을 “맑은환경본부”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부록 3.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서울특별시,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소록 (2008.12.30현재)

구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소파1길 2	318-0227
1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7-12	3414-9966
2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번2동 318 강북웰빙스포츠센터 3층	987-2567
3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우현길 34(화곡동 1159-4)	2606-2017~8
4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1571-1	883-9390
5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72-1 광장종합사회복지관 3층	458-0622
6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777-22	830-0450
7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841 3층	803-7747
8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창5동 303 도봉구민회관 2층	2289-1537
9	동작구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1136-1 2층	599-3301
10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8-19	3142-5482
11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9-31 예림빌딩 4층	322-7595
12	서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 생활과학대학 401호	957-0760
13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양재 1동 25 서초구민회관 2층	576-2852
14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5-1 한양대 동문회관 101호	3395-9447
15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라이시움 102호	3290-1660
16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27-1	443-3844
17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957-16 4층	2065-3400
18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1동사무소 4층	2678-2193
19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28-10 여성문화회관 1층	797-9184
20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26-45 3층	376-3761
21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6-2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	764-3524
22	중구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 학림관 3층	2260-3898
23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면목8동 51-2호 2층	435-4142

2008-서울건강가정-03

2008 특성화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2

광역단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연구

발행인	이종남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발행일	2008년 12월 31일
저자	송혜림·라휘문
기획·편집	김연화 (가족문화홍보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1길 2
전화/팩스	Tel. 02) 318-8169, 0227/ Fax. 02) 318-0228
홈페이지	http://family.seoul.go.kr
인쇄	한다문화사 (Tel. 961-7500)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저자나 본 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 인용이나 인쇄배포는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SEOU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100-250)서울특별시 중구 소파1길 2 전화: 02) 318-0227 팩스: 02) 318-0228
이메일: sfamilyc@seoul.go.kr 홈페이지: <http://family.seoul.go.kr>